

등록번호	의정담당관-5116
등록일자	2026. 7. 3.
결재일자	2026. 7. 3.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담당자	관리팀장	의 담 당 관	의회사무처장	의 장
서정민	김영민	이재민	김영중	안신익

- 중대재해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

제5대 의회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안]

【 주요 내용 】

- 추진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추진 목적 : 시의회 종사자 및 시설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 목표·경영방침 : 시의회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비전

현장 중심 안전관리로 신뢰받는 안전의회 구현

목표

중대산업·시민 재해 ZERO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고도화

○ 주요 계획

-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②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추진 사항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총괄·관리 및 이행점검·보고 계획 수립

※ 위해 요소의 사전 해소 및 재해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재해 대응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 회 사 무 처

목 차

I. 추진 개요	3
II.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4
III. 일반 현황	6
IV.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	9
1.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9
1-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9
1-2. 전담조직 설치	9
1-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10
1-4. 안전·보건조치 필요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4
1-5.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15
1-6.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17
1-7.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 조치	17
1-8.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대응 매뉴얼 마련	18
1-9. 수행사업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조치	21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조치	25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시정 사항 이행	26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조치	27
4-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조치	27
4-2. 철저한 안전보건 교육으로 안전의식 제고	30
V. 중대시민재해 예방 추진계획	32
1. 중대시민재해 개요	32
2.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33
2-1.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33
2-2. 안전계획 이행 점검 및 개선	38
3.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39
3-1.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39
3-2.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마련	44
3-3. 도급·용역·위탁 시 기준·절차 마련	45
4.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조치	48
5.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시정 사항 이행	48
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조치	48
[참고 1] '26년 주요사업 추진 일정표	50
[참고 2]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 연락처	51
[참고 3] 중대산업재해 관계 법령 상 의무조치 이행사항	52
[참고 4]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54

- 중대재해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 2026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안)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세종시의회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요

□ 목 적

- 사업장에서의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 의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업무와 관계된 건설물 설치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 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	동일요인으로 질병자 3명 이상(1년 이내)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보호 대상		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적용 대상

- (경영책임자)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방의회 의장'을 경영책임자로 판단*

*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 고려(고용노동부 질의회신집("23.5.))

구분	경영책임자
공공 분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 (민간)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담당자

- (보호대상) 종사자(「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등) 및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공무원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포함

* 「산안법」 상 공공행정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는 현업업무(경비 등) 종사자만 해당

□ **주요 의무(안전 및 보건 확보)**

○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5조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해당여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근로자 500인 ↑)	×
	③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
	④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
	⑥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근로자 50인 ↑)	×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
	⑧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⑨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
⑩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⑪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관리상의 조치	⑫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
	⑬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법 제9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10조, 제11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업무 수행하고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② 안전계획 수립·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③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④ 이행·점검 보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⑤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점검신고·개선, 사고 시 조치, 대피훈련)
	⑥ 도급·용역 위탁 시 -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절차 마련 -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 연 1회 이상 이행점검
⑦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⑧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리상의 조치	⑨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⑩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처벌 규정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

구분	사업주·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

I

추진 개요

□ 수립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조치에 대한 방안 수립 필요
 - 경영책임자(의장)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 정립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이행 계획 수립·추진
- 법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관리로 중대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 추진 방향

- 법적 안전보건 의무사항 철저 이행·관리로 중대재해 제로화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이행
- 사각지대 없는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 이행사항의 점검 및 위해요소 적극 발굴을 통한 시설개선 추진
-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보건관리로 종사자의 건강장해 예방
 - 근로자·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및 예방절차 마련·이행

□ 관계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2. 1. 27.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 1. 26.)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21. 10. 5.)
-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 설치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안내 (고용노동부, '21. 12. 27. / 국가 및 지자체 중대법 및 산안법 적용 안내 포함)

□ 그간 경과

- 세종시의회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안) 수립: '23. 5. 4. ~
 - 관리팀 신설*('24. 7월) 이후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관련 업무 확대 이행
- ☞ 전담조직 부재로 시설 관리인력 종합·실행계획 수립,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 총괄 및 실행 업무 동시 이행 중[인력: 2명(관리팀장, 시설6급)]

II 안전 · 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 안전 · 보건 비전 및 목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중대재해 예방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비전 현장 중심 안전관리로 신뢰받는 안전의회 구현

목표 중대산업 · 시민 재해 ZERO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중대 산업 재해 예방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의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의회 종사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 참여 활성화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이행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2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의무이행·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점검 및 보고·개선
-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중대 시민 재해 예방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계획 수립·이행·점검 및 개선조치 마련
- 대상시설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체계 구축

2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계적 관리



- 시민재해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체계 확립
 - (예방) 유해·위험요인 사전 점검·개선
 - (대비)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마련
 - (대응 및 복구) 중대시민재해 발생 후 대응 및 복구

3 이행사항 점검 및 예방절차 마련



-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및 보고·개선
- 도급·용역·위탁사업 관리 점검 및 보고·개선
- 재해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이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전보건 경영방침

세종시의회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의회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세종을 실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책임의식으로 성실히 이행한다.
2.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과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한다.
3. 재해에 대한 예방체계를 마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개선한다.
4.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과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026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안 신 일 

III 일반 현황

1 종사자 현황

① 의회 소속 종사자 현황

(‘26. 7. 1.기준)

합계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	
근로자수	현업	근로자수	현업	근로자수	현업	근로자수	현업	근로자수	현업
94	1	89	-	5	-	-	-	1	1

② 대응조직 체계도



<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 >

■ 경영책임자 : 의장

- ◆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책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의회사무처장

- ① 사업장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⑦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⑨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⑩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용역·위탁 사업) : 의회사무처장

- ①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②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 ③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감독
- ⑤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안전보건관리 분임책임자 : 부서장 및 전문위원

- ◆ 부서 소관 추진사업 종사자의 안전·보건 의무이행 총괄 책임

■ 관리감독자 : 의정담당관

- ①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④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지도·조언에 협조
- ⑥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 안전관리자 **비대상**

- ① 위험성평가, 위험기계·기구, 안전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②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지도·조언 및 보좌

■ 보건관리자 **비대상**

- ①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 ② 유해요인 노출업무 종사자 특수건강진단, 물질안전보건 자료 조사 및 관리 등

2

세종시 의회 의무사항 및 선임 대상

○ (종사자 수) 94명(현업업무 종사자 1명(청원경찰))

※ 「산안법」 상 '공공행정'의 경우 현업업무(경비 등)종사자만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 세종시의회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이행사항

구분	의무 사항	해당 여부	비고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해당 없음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	산·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	산·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	산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해당 없음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	산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중대산업·시민재해 매뉴얼 마련)	○	산·시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	산
관리상의 조치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산·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산·시
	법령 상 의무 이행, 이행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 시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산·시

※ (적용대상 표기) 중대산업재해: 산 / 중대시민재해: 시

○ 세종시의회 「산업안전보건법」 상 선임 대상

구분	선임의무	해당 여부
경영책임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당연 적용	해 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공행정) 현업업무종사자 100명 이상	비해당
관리감독자	(공공행정) 현업업무종사자 1명 이상	해 당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공공행정) 현업업무종사자 50명 이상	비해당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공행정) 현업업무종사자 100명 이상	비해당
안전보건업무담당자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지 않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비해당

IV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 계획

1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

1-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영 제4조제1호

- (목표·경영방침 수립) 시의회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마련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계획을 내포된 비전 수립

비전 현장 중심 안전관리로 신뢰받는 안전의회 구현

목표 중대 산업·시민재해 ZERO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고도화

- (정책 마련) 안전·보건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마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① 세종시의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② 재해 발생 시 대응조직 마련
중대재해 예방의 체계적 관리	① 세종시의회 종사자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이행 ② 중대재해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③ 중대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④ 중대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이행사항 점검 및 예방절차 마련	①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정기점검 및 시설관리 실시 ② 시의회 발주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 및 점검 ③ 재해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이행

1-2 전담조직 설치 영 제4조제2호 **비대상**

- (설치 대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및 안전보건 전문인력* 3명 이상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소속 현업업무종사자 50명 이상)
 - 시의회 인력 현황(상시근로자(91명), 현업종사자(1명)) 상 설치 비대상
- (담당 조직) 관리팀(담당자 1명: 시설6) 중대재해 업무 수행 중
 - (여건) 의회 인력 여건을 배제한 경영책임자 해석으로 시의회 중대재해 종합·실행계획 수립 및 연중 이행사항 확인 등 법적 의무로 업무과중

❖ (인력 충원) 시설6급(1명)이 청사관리 및 방호·차량·물품 및 중대재해업무 담당중으로, 시설 노후와에 따른 향후 증축, 시설 관리 등 청사 여건 고려 시 관리인력 충원(공업7급 1) 시급

※ (제89회 운영위 행감 지적사항)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 충원 및 市 협력 등 해소방안 강구

※ (市 중대재해 전담조직 현황) 종합계획 수립 등 총괄업무 수행

시민안전실(4과)	· (시민안전실) 안전정책, 사회재난, 자연재난, 민원
사회재난과(4팀)	· (사회재난과) 사회재난, 중대산업재해, 안전점검,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팀(4명)	· (중대산업재해팀) 팀장 1명(행정5), 담당자 1명(행정6) - 안전관리자 1명(임기 다), 보건관리자 1명(간호7) / 산업보건의 1명(위촉)
중대시민재해팀(3명)	· (중대시민재해팀) 팀장 1명(시설5), 담당자 2명(시설7·공업8)

가 위험성 평가

평가 목적

-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가스, 증기, 분진, 작업 행동 등 업무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로 위해요소 제거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2024. 12. 18., 일부개정(시행 2025. 1. 2.)]

□ 평가 개요

- **(절차 마련·이행)** 영 제4조제3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실시하는 사항으로 확인·개선 절차 같음
- **(평가 시기)** 정기(매년 1회/26.11. 예정) 및 수시 평가(사유* 발생 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제2항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 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평가 대상)** 종사자가 일하는 공간 전체(사무공간, 내·외부 작업장 등)
- **(실시 주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회사무처장) :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 관리감독자(의정담당관) :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시행 등
- 종사자 : 유해·위험요인 의견 제시 등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 건의함 설치로 시설 위해 요소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출 등 참여성 확대

- **(내용)**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작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추정 및 허용 불가능한 위험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

○ (평가 방법) 작업장 여건에 부합한 '4M 기법'을 활용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빈도·강도법'으로 위험성 수준 결정

Machine (기계적)	① 기계·설비 설계상의 결함 ② 방호장치의 불량 ③ 본질안전화의 부족 ④ 사용 유틸리티(전기, 압축공기, 물)의 결함 ⑤ 설비를 이용한 운반수단의 결함 등
Media (물질환경적)	① 작업공간(작업장 상태 및 구조)의 불량 ② 가스, 증기, 분진, 흙, 미스트 발생 ③ 산소결핍, 병원체,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전동,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조도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④ 취급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
Man(인적)	① 근로자 특성(미숙련자 등)에 의한 불안전 행동 ② 작업정보의 부적절 ③ 작업 자세, 작업 동작의 결함 ④ 작업방어의 부적절
Management (관리적)	① 관리조직의 결함 ② 규정, 매뉴얼의 미작성 ③ 안전관리계획 미흡 ④ 교육, 훈련 부족 ⑤ 부하에 대한 감독, 지도 결여 ⑥ 안전수칙 및 각종표지판 미게시 ⑦ 건강관리의 사후 관리 미흡

*** 위험성 빈도·강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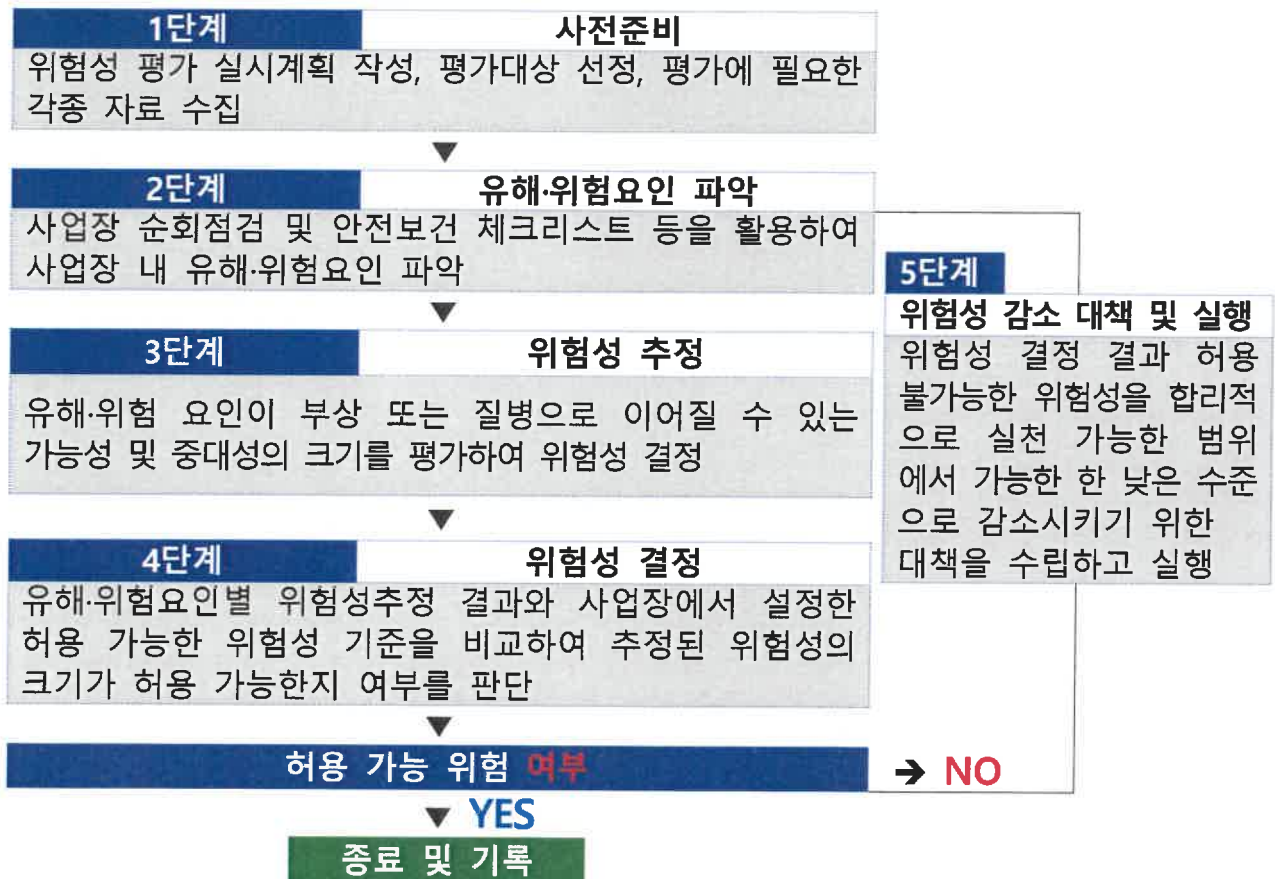
- ▶ 최소 1점에서 최대 20점으로 구성,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
- ▶ 발생 가능성(5점 척도) × 중대성(4점 척도) = 위험성(최대 20점) 산출

위험성(Risk) [최대 20점]		=	사고발생 가능성(빈도) [5점 척도]		×	사고결과의 중대성(강도) [4점 척도]	
중대성(강도)			최대	대		중	소
가능성(빈도)			4(사망)	3(장해)		2(병원치료)	1(비치료)
최상	5 (매우높음)		20	15		10	5
상	4 (높음)		16	12		8	4
중	3 (보통)		12	9		6	3
하	2 (낮음)		8	6		4	2
최하	1 (매우낮음)		4	3		2	1

○ (관리 기준) 위험성 평가 점수에 따라 허용가능 여부 판단

허용가능여부	위험성 결정		관리기준
허용 가능한 위험	1 ~ 4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5 ~ 6	경미한 위험	안전정보 및 주기적 안전교육 제공이 필요한 위험
	8	보통위험	유해위험 표지 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허용 불가능한 위험	9 ~ 10	상당한 위험	계획된 정비, 보수 기간에 안전 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12 ~ 15	중대한 위험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16 ~ 20	허용불가 위험	즉시 작업중단(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 평가 절차



※ '25년 평가 결과

- ▶ (총평) 발굴 위해 요소 대부분이 허용 가능 위험도 범주 내 분포 등 전반적으로 안전한 작업장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음
- ▶ (개선사항) 지속적 작업장 안전관리 및 근무자 공감대 형성을 안전인식 저변화
 - ① (재해 관련 정보 공유) 재해 발생 사항에 대한 근무자 공유 등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부여
 - ② (상시 점검체계 구축) 작업장 및 보유 장비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작업장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 마련으로 작업장 관리 철저

나

유해인자 노출 작업장 작업환경측정

비대상

측정 개요

- ❖ 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요인 작업장 내 정도 여부를 측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 존재 할 경우 이를 개선하여 근로자 작업환경개선
-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제2020-44호, 2020. 1. 15., 일부개정]

○ (평가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에 따라 유해인자* 노출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年 2회) → **시의회 비대상**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취급 작업장

↳ 화학적 인자(182), 물리적 인자(2: 8시간 시간 가중평균 80dB 이상 소음, 고열), 분진(7)

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조사 개요

- ❖ 단순반복 등 근로자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보건조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제2020-12호, 2020. 1. 6., 일부개정]

○ (대 상) 근골격계부담작업 종사자 / (조사 방법)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조사 시기) 정기(3년 주기*) 및 수시 조사(사유 발생 시)

* 市(사회재난과) 협조로 의회 협업종사자 합동 조사 실시('25. 7월)

필요 예산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을 위한 예산 분야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유해·위험요인(위험성 평가 등으로 인한 개선요구사항)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안전보건 관련 예산 세부항목(안)

- ① 인건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안전·보건 인력에 대한 비용
- ② 위탁관리비 : 안전·보건 관리 위탁(30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컨설팅(위험성 평가 등) 비용
- ③ 시설관리 : 위험시설(기계, 장비)의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 등
- ④ 교육 및 홍보 : 안전보건교육 비용(종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홍보 비용
- ⑤ 건강검진비 : 현업근로자 건강검진비, 건강 관리를 위한 물품 및 응급약품 구입비 등
- ⑥ 안전장비 :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장비(가스농도측정기 등) 및 안전장치 구입 비용

○ (예산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등 종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예산 편성

- 유해·위험요인 확인 절차 등에서 확인된 사항을 재정 여건 등에 맞춰 제거·대체·통제 등 가능 수준만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

< '26년 본예산 기준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합계	예산액 소계	사업명
합 계	항목	59,000	60,200	
시설 관리	· 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52,400	30,000	· 의회청사 유지 및 보수
			20,000	· 의회청사 환경개선
			3,600	· 의회청사 방역
	· 기계·설비, 시설물 안전검사	6,600	3,600	· 승강기 위탁점검 수수료
교육 및 홍보	· 안전인력 육성 및 교육	-	3,000	· 소방시설 정기점검 수수료
			-	· 현업종사자 정기교육 (市(사회재난과) 교육 대행)
			-	· 관리감독자 교육

○ (예산 집행) 재해예방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용도에 맞게 집행 추진

- (관리자 지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권한·예산 부여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의회사무처장(법정 비의무대상)

관리감독자

의정담당관

- ① (안전보건 관리·총괄 책임자) 법적 비선임 대상*이나 사업장 및 관계수급인의 빈틈없는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지정 운영 **비대상**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대상으로, 공공행정인 시의회의 경우 상시(현업)종사자 1명으로 원칙적으로선임 비의무 대상

-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산안법」 제15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평가 실시(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의회사무처장)

- ①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
-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⑨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⑩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안법」 제62조에 따른 업무수행 권한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용역·위탁 사업) 직무(의회사무처장)

- ①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②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 ③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감독
- ⑤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②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6조에 따른 업무수행 권한 부여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관리감독자(현업업무 종사자(청경) 소속 부서장: 의정담당관)

- ①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④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지도·조언에 협조
- ⑥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 (사업장 평가·관리) 세부적인 평가기준(안) 마련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평가 실시(반기 1회 이상)

직책	평가 항목	평가 결과			
		양호	보통	미흡	해당 無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의회 사무처장)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의 실시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의정 담당관)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 전 보건총괄 책 임 자 (의회 사무처장) ※도급시	1.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분기별 합동점검 등)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1-6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영 제4조제6호

비대상

-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산안법에 따른 선임기준을 준수하여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및 업무 수행시간 보장 → **시의회 비대상**

구분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5)		시의회 배치현황 (현업: 1명)	비고 (市배치 현황)
	업종	기준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공공행정	▶ <u>50명 이상 1천명 미만 시: 1명 이상</u> ▶ 1천명 이상 시: 2명 이상	비대상	2명 (시간선택임 기제 다급)
보건관리자		▶ <u>50명 이상 5천명 미만 시: 1명 이상</u> ▶ 5천명 이상 시: 2명 이상		1명 (간호·보건·환경 7급)

* (상시근로자 수) 공공행정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현업업무**(시설관리, 도로 유지·보수, 환경미화,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조리원 등) 종사자 수만 해당

- (산업보건의 배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상시근로자 2천명 당 1명) → **시의회 비대상**

1-7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 조치

영 제4조제7호

-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종사자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논의·심의·의결을 통해 종사자 의견 청취 → **시의회 비대상**
- ※ 공공행정의 경우 현업업무종사자 100명 이상 설치 대상
- (의견 청취 창구) 「산안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공공행정의 적용 제외로, 전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별도 창구 개설
- ※ 작업장별 회의, 건의함 설치, TBM 등 자유롭게 개진하는 방식 활용 중
- (개선 조치)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대책 및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 이행

□ 추진 방향

- (신속한 상황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발생 시 조치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 최소화

※ 세부사항 「세종시의회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참조

-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 상황 발생에 따라 시 유관부서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 체계 구축

□ 추진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8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8.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적용 대상

- 의회 직접고용 종사자(공무원, 공무원직, 기간제 등) 및 도급·용역·위탁 등 제3자의 종사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으로 중대산업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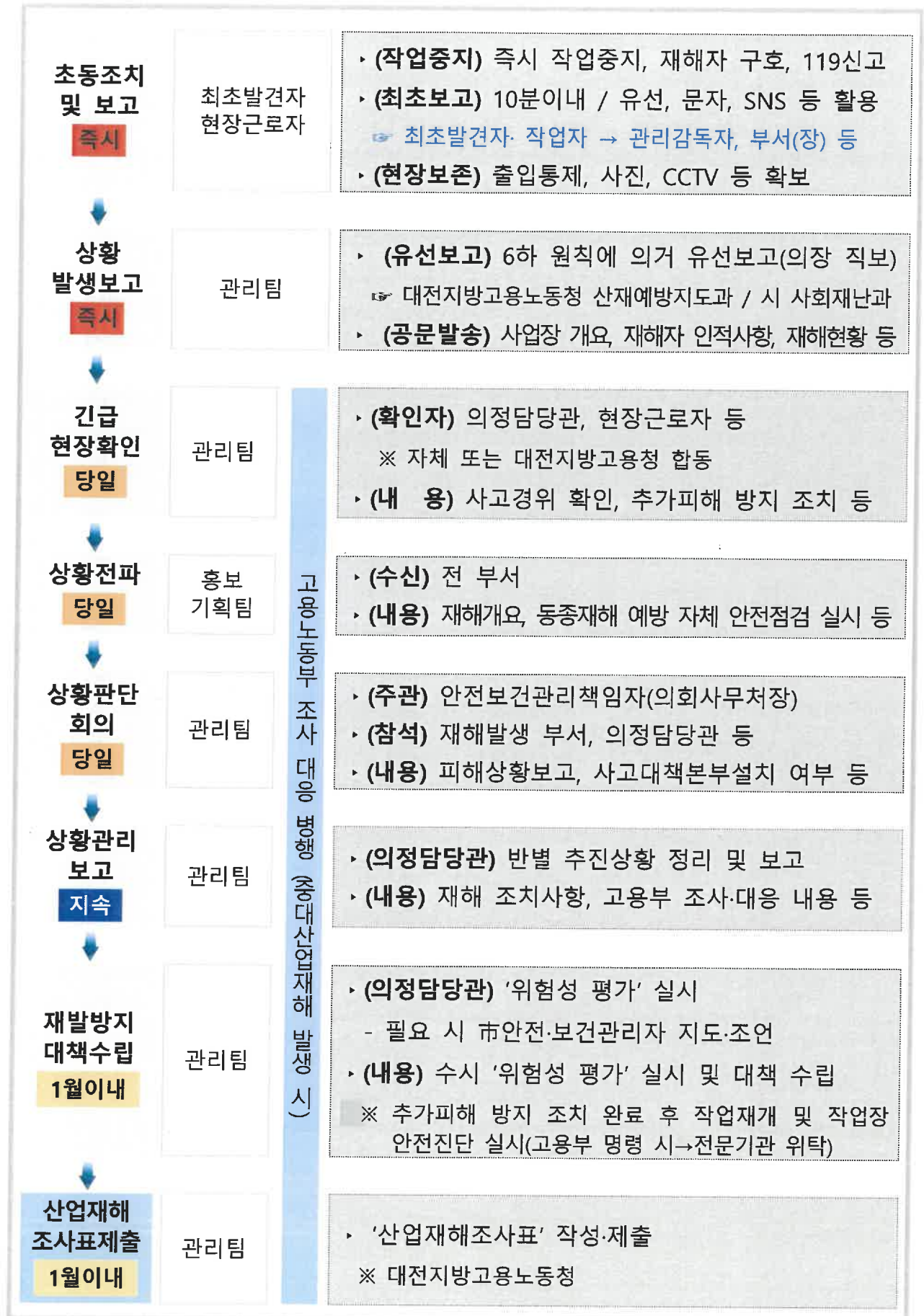
* 추락·붕괴위험, 화재·폭발 위험, 질식위험, 화학물질 누출 위험 등이 높은 경우

< 재해 정의 >

※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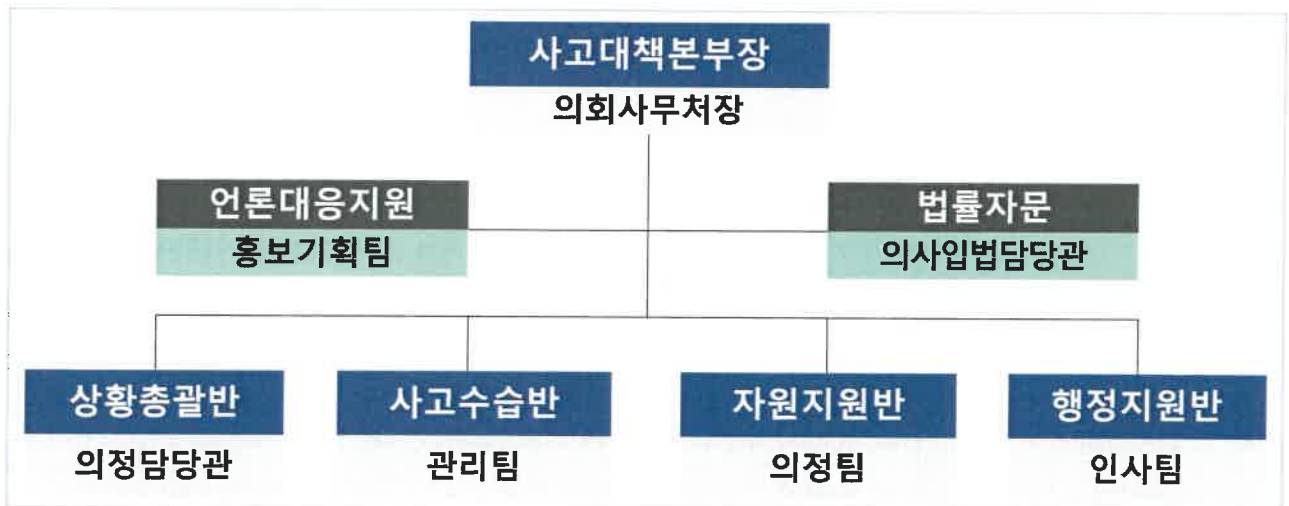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 대응 절차도



□ **사고대책본부 운영계획[안] ※ 필요 시 구성**

- (운영 기간) 대책본부 설치 시부터 ~ 상황 종료 시까지
- (본부 구성) 4개 반(관계부서 합동)
- (주요 기능) 상황관리·보고, 유족·부상자 지원,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 **주요 임무**

구분	소관	주요임무
사고대책 본부장	의회사무처장	▶ 사고 대응 및 수습 지휘 ▶ 대응 관련 주요 의사결정, 조정 및 지원
상황 총괄반	의정담당관	▶ 사고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총괄 ▶ 안전 및 보건 조치사항에 대한 지도·조언 ▶ 고용노동부 조사 대응(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사고 수습반	관리팀	▶ 인명 및 재산 피해 상황 파악 ▶ 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조치 실시 ▶ 유족간 장례절차 등 협의 및 직원 배치 및 현장 조력 ▶ 고용노동부 조사 대응(관리감독자 안전보건의무 이행여부 등)
자원 지원반	의정팀 (필요 시 시청 협조)	▶ 재해유형별 복구·지원 등 필요사항 지원·조치 - 시설복구, 의료지원, 환경정비, 오염처리, 자원봉사 등 ※ 재해현장 규모/상황을 고려하여 편성
행정 지원반	인사팀	▶ 의장님 사상자 방문(빈소, 병원) 의전 ▶ 산재보험 및 단체보험 등 보상, 심리치료 지원 등 ▶ 사망사고 시 장례절차지원, 분향소 설치 등
언론대응지 원	홍보기획팀	▶ 언론 브리핑 지원 및 취재 대응, 기사 모니터링
법률자문	입법지원팀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검토 등 ▶ 민사·형사상 소송 절차 대응·지원 등

가

추진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제1절(도급시 산업재해예방)·제2절(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나

관리 대상

- (대상사업)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도급, 용역, 위탁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
- 의회가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단,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하면, "도급인 책임"을 아니면 "건설공사발주자"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 > * 출처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p.109

- ▶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
- ▶ 의회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밖이라도 의회가 작업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

- (보호대상) 도급·용역·위탁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

다 도급·용역·위탁 등 안전보건 조치사항

01 도급사업 대상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금지 업무 및 도급 승인 대상 여부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대상사업 여부 검토

발주자

02 적격수급인 선정

계획단계

- 과업지시서에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제시
- 비용 산출내역서에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발주자

↓

공고단계

- 입찰공고시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
-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제출 명시

계약담당

↓

심사·평가

- 참가업체 안전보건 확보 정도 확인 및 심사·평가

발주자

계약체결

-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징구

계약담당

↓

계약이행

- 사업장 안전보건 의무이행 관리·감독 철저

발주자

↓

준공단계

- 안전보건관리비 실집행 확인·정산

발주자

03 안전보건활동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별) 및 작업장 순회점검(주 1회)
- 안전보건교육 지원(장소 및 자료 제공 등) 및 실시 확인
-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 수급인 위험성 평가 실시 점검 및 지원
- 작업환경측정(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안전보건 정보제공,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 협조

발주자

04 재평가 및 환류

-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 평가결과 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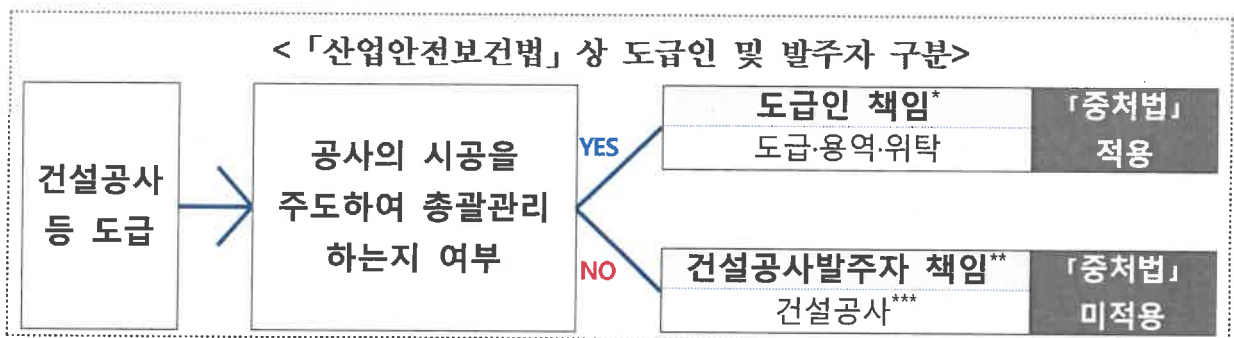
발주자

라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1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 구분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이행

*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 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도급인) 도급·위탁·용역 등 안전보건조치사항 + 건설업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해당사항)

** (건설공사발주자) 건설업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해당사항)

*** (「산안법」 의무대상)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 총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 미만 공사 중 공기 1개월 이상

< '건설공사'의 정의(「산안법」 제2조제11호) >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나. 「전기공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1. 나.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 (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 "문화재수리"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 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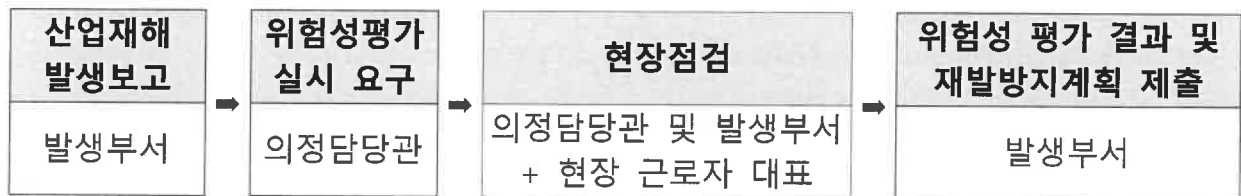
②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

계획·설계 단계별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계획) 발주자는 건설공사 시 중점 유해·위험과 이를 감소 시키기 위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이 포함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의 설계도서를 설계자에게 작성토록 하고 설계자의 최종설계도서 납품 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를 확인 · (시공) 발주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제공, 이를 반영한 안전작업 계획을 담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 이행 여부 확인	발주자
안전보건 조정자	·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해당 공사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업무를 수행	발주자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변경 금지	·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무리하게 공사진행을 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 · 공사비 감축을 위한 위험성 있는 공법 사용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불가	발주자 도급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 불가항력의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도급인(관계수급인)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건설공사도급인)는 공사기간을 연장(연장요청)하여야 함	발주자 도급인
설계변경의 요청	· 건설공사도급인(관계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목·건축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건설공사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발주자는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	발주자 도급인
산업안전보건관 리비의 계상 및 사용	·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매월 작성하여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	발주자 도급인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 건설공사를 발주 시, 도급인이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지도기관과 계약 체결	발주자 도급인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 의 안전조치	· 사업장 내에서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작동하고 있는 경우 유해·위험방지 조치 이행	도급인

□ 「1-8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상 방지대책 마련

- 재해 발생 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시행으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후 작업을 개시

<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조치 절차 >



- (위험성평가 실시) 관리팀
- (재발방지대책 수립)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작업 관련 안전·보건 확보 조치

※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 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재발방지계획” 수립

↳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전체적으로 공유

① 단계	■ 사실의 확인 - “중대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 파악 -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사실 수집
② 단계	■ 재해요인의 파악 -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 파악
③ 단계	■ 재해요인의 결정 -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 결정
④ 단계	■ 재해방지 계획(대책)의 수립 -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 재해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 (작업 재개) 추가피해 방지 조치 완료 후 후속 작업재개 및 고용부 별도 명령 시 작업장 안전진단 실시

❖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개선·시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개선·시정 사항의 이행

- 중앙행정기관* 등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 추진

* 지방노동관서의 감독,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 등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내용은 반드시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 (개선·시정 명령) '행정 처분'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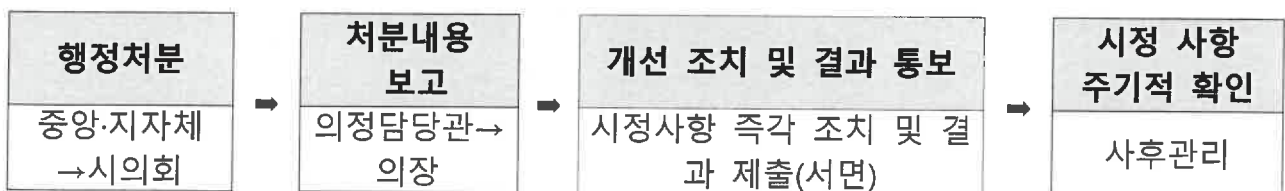
- '행정지도'나 '권고', '조언'은 포함되지 않음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및 보건 확보와 무관한 내용에 대해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조치 사항) 보고 체계 및 이행 여·부 확인 절차 마련

-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사실과 내용에 대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되는 절차 구축
- ② 개선 조치 및 이행결과 서면 제출(「행정절차법 제24조」)
- ③ 경영책임자 등은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에 대한 주기적 이행 여·부 확인

< 이행 절차 >



□ 추진 계획

-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시정명령 시 방안 마련 및 즉각 개선 조치 등 적극 이행
- 유사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철저

❖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개선·시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4호

4-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조치

영 제4조제1호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법적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규정 사항 이행

- 주요 관계 법령 검토 및 '체크리스트' 작성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관련 의무사항 이행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법령명	관련 조문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모두 포함	해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제11조), 정밀안전진단(제12조), 긴급안전점검(제13조), 긴급안전조치(제23조), 시설물의 보수·보강 (제24조)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제5조), 실내공기질의 측정(제12조) 등	해당
「공연법」	재해예방조치(제11조), 안전관리비의 계상(제11조의2), 무대 시설의 안전진단 등(제12조)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정 목적에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포함 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제9조), 안전점검(제14조) 및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제15조), 교육·훈련(제20조) 및 건강검진(제21조) 등의 사항을 규정	
「선박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의무 적용이 제외된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선원법」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등 선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제82조) 등	
「학교보건법」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제4조), 공기 질의 유지·관리 특례(제4조의2) 등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등은 미해당

❖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관계 법령 이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체크리스트(안)

항목	점검 내용			개선사항
	양호	미흡	해당無	
안전보건 관리체제				
○ 안전보건총괄(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및 위촉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업무 부여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변경				
산업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관리, 법령 고지 등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 (산재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제출)				
○ 법령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도급에 따른 산재예방 조치				
○ 도급인 및 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 도급 작업장 순회점검(1회/주)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1회/분기)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업주와 근로자 각 1명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건설업 등 산업재해 예방				
○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기본안전보건대장 수립 및 이행 확인) * 50억원 이상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발주자(50억원 이상)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 사용 시 안전인증 취득 여부 *크레인,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보호구(안전화, 안전모 등) 등				
○ 유해위험기계 등 안전검사 실시 *크레인, 압력용기 등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경고표지 부착·교육 실시				
○ 석면함유 물질 자재에 대한 석면조사				
○ 석면함유 물질 자재 해체제거작업 준수 (석면해체제거업자 도급 여부)				

항목		점검 내용			개선사항
		양호	미흡	해당無	
근로자 보건관리	○작업환경 측정 및 일반·특수건강진단				
안전보건기준	○작업장 및 통로 전도방지 조치 여부 * 미끄럼방지 조치(논슬립테이프 부착) 설치, 바닥 청결, 조도확보 등				
	○안전한 사다리 통로 확보 * 견고한 구조, 전도방지 조치,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등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및 덮개 등 설치 여부				
	○높은 곳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여부 - 비계 설치 후 작업발판 조립, 이동식비계, 말비계 사용				
	○승강기 보수 작업 등 * 방호장치(출입문 인터록 장치 등) 정상 작동, 작업 시 전원 차단 후 잠금장치/표지판 부착 후 작업				
	○밀폐공간 위험작업 보건관리 * 사전허가(프로그램 작성), 출입금지 표지판, 농도측정, 환기,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감시인배치 등				
	○외벽 청소업무 * 작업 전 로프, 고리, 달비계 등 체결상태 확인, 로프 외 구명줄 설치 후 안전대 체결, 로프 및 구명줄				
	○추락 등 위험작업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위험기계 등의 전동기 회전체 등에 덮개 설치 여부				
	○전동기 콘센트 등 접지 연결 여부				
	○기타 안전보건관련 사항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4-2

철저한 안전보건 교육으로 안전의식 제고

산안법 제29조

교육 개요

-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로 인한 역량 강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 현업업무 종사자(청원경찰) 및 관리감독자(의정담당관)

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현업업무 종사자 (청원경찰)	· 매분기 6h 이상	대상자 파악 → 사이버 수강신청 → 사이버교육 및 평가 → 수료 (60점) 사회재난과 → 사회재난과 → 대상자
관리감독자 (현업 소속 부서장)	· 연간 8h* 이상 * 전년도 무재해사업장 (신규, 전년도 재해 사업장 16h 이수)	수강신청 → 우편교재 수령·학습 → 수료 (60점) 대상자 → 대상자

○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 세종시의회 비해당

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신규(3개월 이내)	보수(2년 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h	· 6h	수강신청 → 집체교육
안전보건관리자	· 연간 34h	· 24h	사회재난과 → 대상자

○ (수시교육) 신규채용자 및 밀폐공간·하역기계 사용 등(市(사회재난과) 협조)

구분	대상 및 시간	교육방법
신규채용 시	· 현업업무 종사자(8h)	자체(소속 부서) + 사이버교육(사회재난과)
특별교육	· 위험작업 현업업무종사자(16h) ※ 최초 작업 시 4시간 이상	
	· 위험작업 일용근로자(2h)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일용근로자(8h)	
작업내용 변경 시	· 현업업무 종사자(2h)	자체교육(소관부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일용근로자(1h)	
	· 건설·일용근로자(4h)	

○ (관계 법령 교육) 市(사회재난과·운영지원과) 협의를 통한 대상자 교육

-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안전보건 조치의무 사항 및 타시도 중대 재해 사례 등 전파

< 대상별 교육내용 >

■ 대상별 공통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현업업무 종사자(청원경찰)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현업업무 종사자 소속 부서장(관리감독자: 의정담당관)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V 중대시민재해 예방 추진 계획

1

중대시민재해 개요

법 제9조

중대시민재해 정의

-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부상·질병자 발생 재해

· 【시의회】「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조 해당시설
↳ “시의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 주요 의무사항

- 안전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등

구 분	주요 내용	점검 주기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① 안전인력 확보 및 안전예산 편성·집행	반기 1회 이상
	②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계획 수립·이행	
	③ 상기 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④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신고 및 조치, 대피훈련(1종 시설물) 등	-
	⑤ 도급·용역·위탁 시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비해당)	연 1회 이상
	⑥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연 1회 이상
	⑦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교육 이수여부 점검 및 조치	연 1회 이상

□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구분	법령	대상시설 종류	비고
공중이용시설	시설물 안전법	1·2종 시설물	도로교량(연장 100미터 이상 등)
			도로터널(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의 터널)
			철도사면(도로사면)
		건축물	의료시설(연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연면적 5천㎡ 이상)
		상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지방상수도)	
		3종 시설물 준하는 대상	도로교량(준공 후 10년 경과/20미터 이상)
			도로터널(준공 후 10년 경과)
	실 내 공기질 관리법	의료기관(연면적 2천㎡이상, 100병상 이상)	
		노인요양시설(연면적 1천㎡이상)	
		건축법상 업무시설(연면적 3천㎡이상)	시의회
		건축법상 둘 이상 용도사용 건축물(연면적 2천㎡이상)	
		실내 체육시설(관람석 수 1천석 이상)	

2-1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영 제10조제4호

목적

- ❖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별 여건에 맞는 인력, 예산, 안전점검, 훈련 및 교육 등 안전 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
-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4호(안전계획 수립)

□ 추진 방향

- 분야별 연간 안전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시
- 필수 내용* 포함 여부 및 시민 안전을 위한 계획 수립 필요

* 시행령 제10조 제4호에 따라 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관련 사항 포함 의무

□ 주요 내용

-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업무처리 절차*
 -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추진체계 및 조치사항 마련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계획
- 그 외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법령의무 이행 및 교육이수 등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처리 절차 마련

- (주요 내용)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발생 시 현장에서 대응할수 있는 절차 마련

※ 세부사항 「세종시의회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참조

①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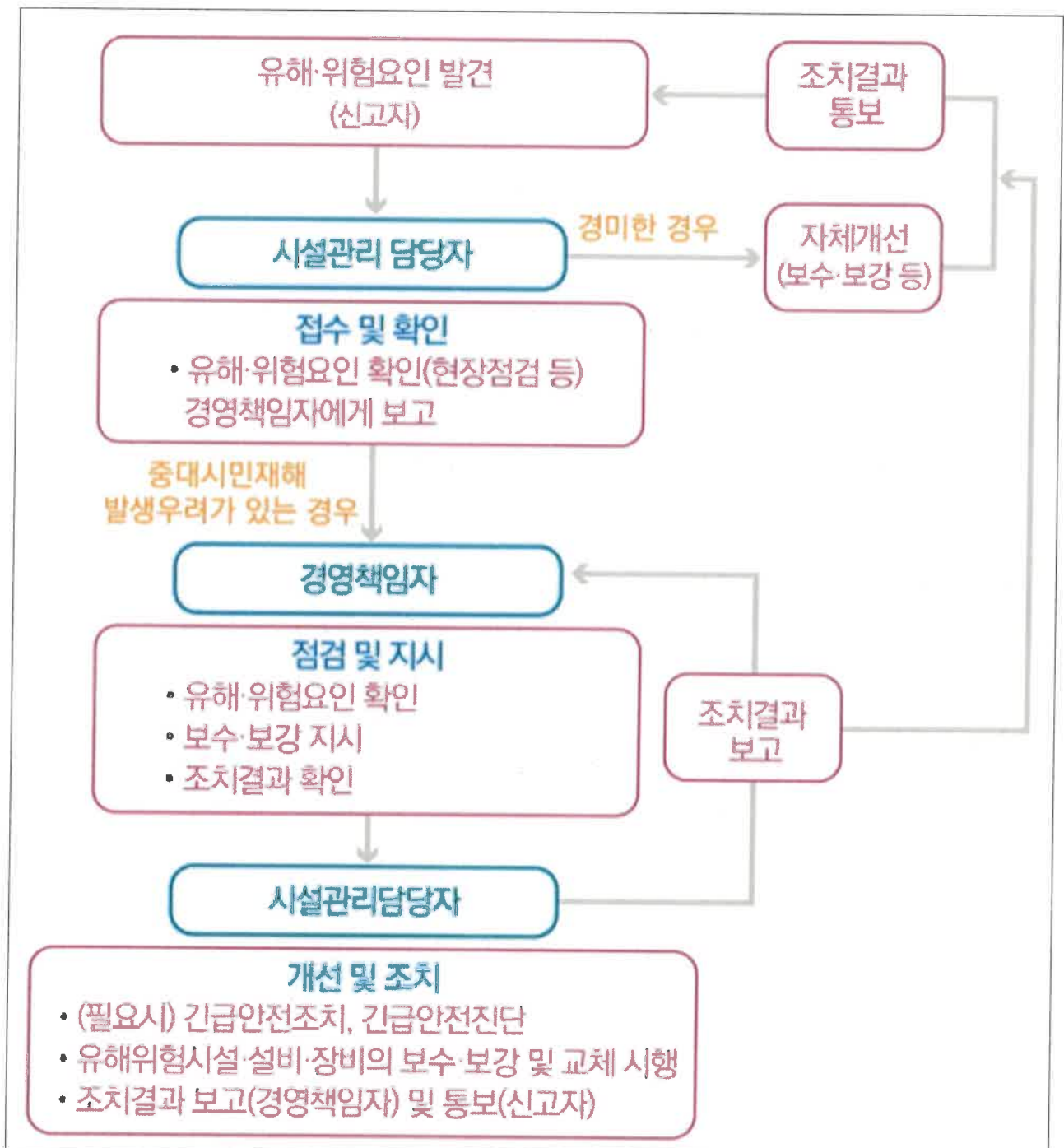
-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육안 관찰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의 발굴 실시

※ (정기 점검) 반기별 및 해빙기·장마 대비 / (수시 점검) 시설물 일일점검 및 순찰

② 유해·위험요인의 발견 시 개선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요인 발생 시 시설관리자 위해요소 확인 및 경미한 사항의 경우 자체 개선
-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 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후 보수·보강 조치 실시

<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개선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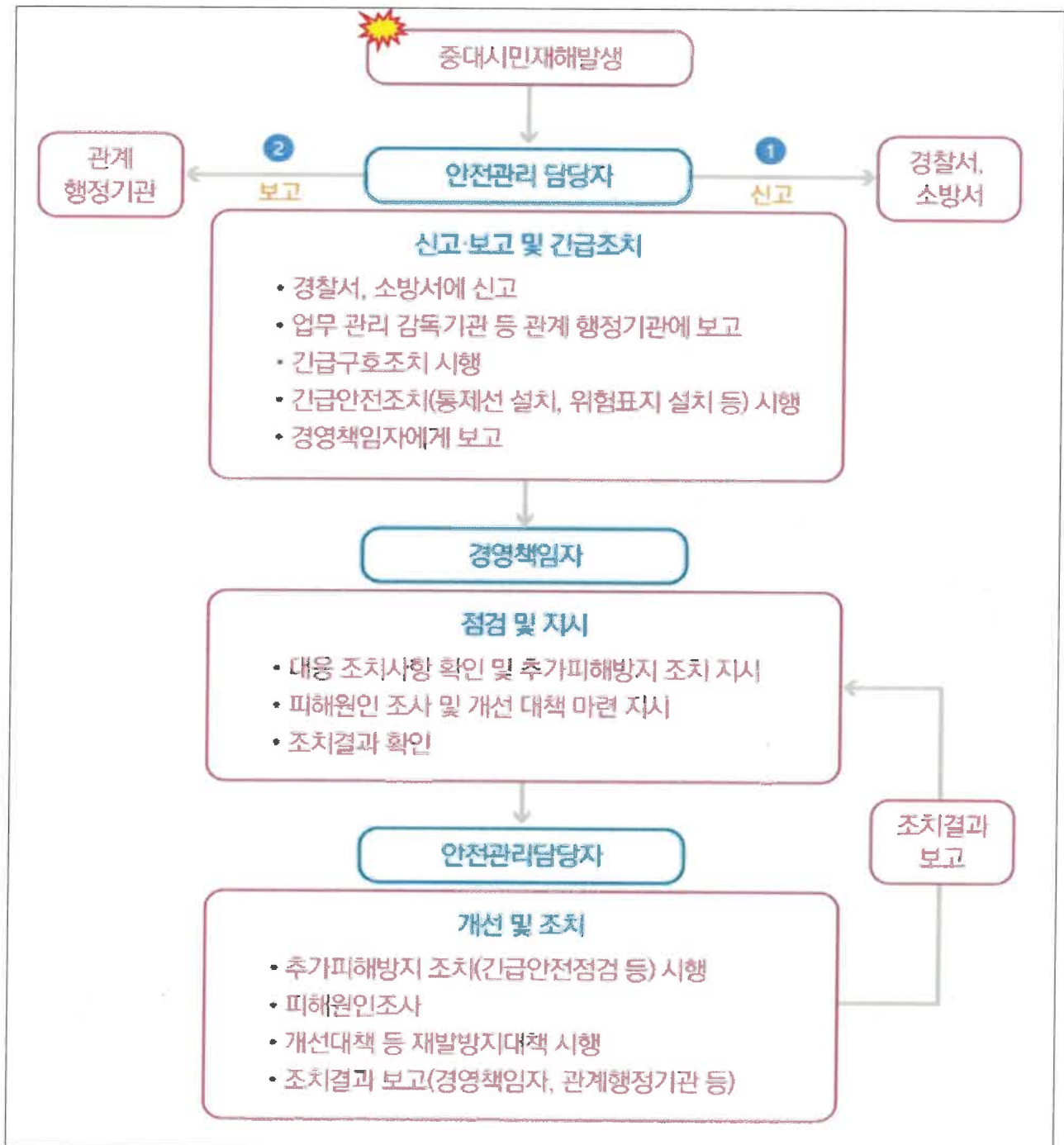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 발췌

③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 중대시민재해 발생한 경우 유관 기관(경찰서, 소방서 등)에 즉시 신고, 긴급 구호·안전조치 실시 및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 필요 시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및 상황 종료 후 피해 원인조사, 개선 대책 강구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



※ 국토교통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 발췌

나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2026년 세종시의회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안)

1. 공중이용시설 개요

시 설 명	세종시의회	준 공 일	2016. 12. 1.
관리방법	직영	관리주체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소 재 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보람동 718)		
적 용 대 상	☐ 시설물안전법(제1·2·3종) ☒ 실내공기질법 ☐ 기타		
종 류	실내공기질(건축물-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적 용 근 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가항	제원	연면적 8,476.92㎡ (지하 2,389.68㎡ / 지상 5,813.01㎡)
담당자	시설6급 서현모	연락처	044-300-7232

2. 안전인력 현황 (2명)

수행인력	공무원 2 (관리팀장 1, 담당자 1)
------	-----------------------

3. 안전예산 현황 (66,200천원)

① 인건비	-
② 안전점검비	16,200천원 (승강기안전점검 3,600, 소방시설점검 3,000, cctv점검 9,600)
③ 보수보강비	20,000천원 (의회청사 보수공사(시설비))
④ 기타비용	30,000천원 (의회청사 유지보수(공공운영비))

4. 안전점검 추진계획

구 분		점검주기	점검실적 (이전 실시일)	추진일정(실시 기한)
안전점검	승강기 안전점검	매월	'26. 6. 25.	매월 정기점검 실시
	소방시설 점검	년 2회	'26. 5월	소방시설 작동점검('26.11월)

5.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계획

구분	주요내용	예산액(천 원)	추진일정
보수보강	의회청사 시설개선 공사	20,000	연중
	소규모 유지보수	30,000	연중
유지관리	CCTV 유지보수	9,600	매월
	소방안전점검	3,000	매월
	승강기안전점검	3,600	매월
	청사시설 유지관리 장비 등 구입	15,000	연중
	청사 방역·소독	2,400	년 8회

6.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

수립 여부	수립일자	수립내용	비고
수립	'25. 6월(최초)	- 유해·위험요인의 발견 시 개선에 관한 사항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주요 지적사항	지적사항 없음		

7. 도급, 용역, 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 (중대시민재해 예방 도급·용역·위탁 업무처리 절차 표준안 참고)

수립여부	수립일자	수립내용	비고
수립	'25. 6월(최초)	- 수탁자 선정 기준 마련 - 안전·보건 의무이행 여부 확인 등	-

8.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관계법령	의무사항	이행주기 (이전 실시일)	이행횟수 (회, 건)	추진일정 (실시기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자체점검	매월	12	매월
	종합점검	2회/년	2	5월, 11월
감염병예방법	방역소독	8회/년	상반기 4 하반기 4	2월, 4월, 5월, 6월, 8월, 10월, 11월, 12월

9. 법정교육 이수

의무교육명 (교육대상)	교육주기	성명 (선임일자) 서현모 (24. 7. 31.) 정경호 (24.7.31.)	이수계획 (법정 이수기한) '24.9.1.이수완료 / (이수기한 '27.8.31.) '26.3.13.이수완료 / (이수기한 '28.6.20.)
승강기 관리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	3년		
소방안전교육 (소방 안전관리자)	2년		

목적

- ❖ 안전인력 확보·예산 집행·안전점검·유지보수 등 추진사항 점검 및 미흡사항 개선을 통해 의무 이행 누락 방지 및 시민 등 이용자 안전 도모
-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5호(이행점검) 및 제11조(관리상 조치)

□ 추진 개요

- (점검 주체) 관리팀 / (점검 및 보고 시기) 상·하반기 등 연 2회*

* 각종 중대재해 관련 점검 중복으로 '중대산업재해' 점검 시 병행

□ 주요 점검사항

- (안전계획 점검) 인력, 예산확보 및 집행, 유지관리 적정성 등
- (의무이행 점검)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 의무이행 여부
- (재해 예방)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여부
 -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 재해 발생 시 대응 / 비상 시 대피훈련 절차 등
- (도급·용역·위탁 등) 수탁자 선정·평가 기준 마련 및 의무이행 여부*
 - * 수탁자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적절한 의무이행 여부 점검
- (교육) 안전관리자 등 분야별* 의무교육 이수 여부
 - * 전기, 소방, 승강기, 기계, 실내공기질, 수도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 안전교육

□ 점검결과 개선

- (개선 시기) 상·하반기 점검 후
- (개선 내용) 시설별 점검 결과에 따른 의무 이행 미흡사항 조치
 - 시설별 특성에 따른 추가 조치 등 필요사항 수시발굴 및 개선

□ 추진 계획(안)



3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법 제9조제2항제2호

3-1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영 제10조제7호 가목·나목

목적

- ❖ 중대시민재해 발생 전 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의 사전 발굴 및 개선 조치하여 이용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
-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7호 가목 및 나목(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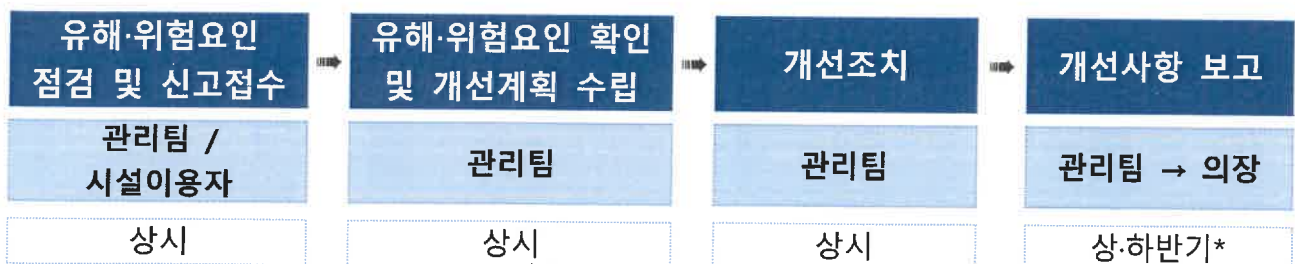
□ 추진 개요

- (점검 주체) 관리팀 및 시설이용자
- (점검 시기) 관계 법령에 따른 정기·일상점검 및 이용자 수시접수
- (점검 방법) 유해·위험요인 정기점검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서식1) 활용 및 수시점검 후 '관리대장'^(서식2) 작성

□ 주요 내용

- (점검 사항) 관계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 및 관리자 수시점검
 - *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 등(「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점검은 제외)
- (신고 사항) 시민 등 시설 이용자 신고*사항 확인 및 점검
 - * '시민' 등 이용자가 직접 제보 또는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된 사항
- (개선 조치) 점검 후 '개선 필요사항' 보수·보강 등 조치
 - (경미한 사항) 확인 후 즉시 현장개선 조치
 - (중대한 사항) 시설물 이용 제한 후 보수·보강 등 개선 조치

□ 추진 절차(안)



*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점검 결과 보고 시 개선사항 통합 보고

서식 1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안)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

□ 공통분야

구분	점검항목	평가결과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
공통 분야	1. 이력카드의 구비 및 기록여부(소방계획서)				
	2.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부재시 대응방안 수립 여부				
	3. 긴급재난시 대피지침 수립여부				
	4. 비상연락망 구비여부				

□ 건축분야

구분	점검항목	평가결과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
주요 시설	1. 보의 변형 및 균열 상태				
	2. 기둥(내력벽 등)의 변형 및 균열 상태				
	3. 슬래브(바닥판)의 변형 및 균열 상태				
	4. 주계단의 변형 및 균열 상태				
	5. 벽체의 변형 및 균열 상태				
	6. 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7.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8. 주요강재의 변형 및 접합부 상태				
일반 시설	9. 지붕(옥상)의 균열 및 상태				
	10. 계단실(복도)의 균열 및 상태				
	11. 외벽타일 또는 석재의 균열 및 탈락상태				
	12. 시설 외부 또는 내부의 과하중(물탱크 등) 여부				
	13. 강재의 도장 및 관리상태				
부 대 사 설 장	14. 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				
	15. 마감재(광고판 등)의 돌출 및 위험요소(충돌, 안전사고) 여부				
	16. 상 하수도주변 시설 파손 및 누수				
	17. 대형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 안전성 및 관리상태				
	18. 안전망 등의 설치여부 및 상태				
	19. 공사용 안전 가시설 등의 설치여부 및 상태				

□ 전기분야

구분	점검항목	점검 결과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
인입구 배선 (육안으로 점검할 것)	1. 규격 전선의 사용 여부				
	2. 전선 접속 상태				
	3. 전선 피복의 손상 여부				
	4. 배선공사 방법의 적합 여부				
옥내배선 (옥외, 옥측배선 포함) (육안으로 점검할 것)	5.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6. 전선 피복의 손상 여부				
	7. 배선공사 방법의 적합 여부				
	8. 비닐 코드선 사용 및 문어발 배선 사용 여부				
	9. 보행로 전선 노출여부				
누전차단기	10. 누전차단기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11. 열화 및 손상 여부				
개 폐 기 (차단기를 포함한다)	12. 개폐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위치의 적합 여부				
	13.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14. 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15. 개폐기의 결선 상태				
	16. 다선식 선로의 각극 개폐장치 여부				
비상전원설비	17. 정전시 비상전원확보(비상발전기, UPS) 및 정상운전 여부				
배 전 반	18. 배전함 커버손상 및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의 밀봉여부				
부하설비	19. 전기가계기구 금속제 외함 접지 및 접지용 콘센트 사용여부				
조명시설	20.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상태				

□ 기계분야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
시설영역	1. 배관의 파손·누수·누기 및 유지관리 상태				
	2.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3. 보일러, 공조시설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4. 기계실 모든 자재의 정리 정돈 상태				
	5. 지하설비 누수 상태				
	6. 급수·급탕·공조시설 관리 및 안전성				
	7. 오·폐수처리시설 가동상태				
	8. 기계식주차시설·주차타워 등의 안전관리 실태				
	9. 화재 등 비상시 승강기의 비상운전 작동상태 여부				
	10. 승강기 내·외부 안전표지 부착 확인 등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서식 2

유해·위험요인 점검 관리대장(안)

유해·위험요인 점검 관리대장

- 시설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사
□ 부서명 : 의정담당관 관리팀
□ 담당자 : 시설6 서현모

연 번	점검 일자	점검유형		점검결과		조치결과			
		분야	점검주체 (업체명 등)	지적 건수	주요내용	조치건수			조치계획 (조치종만 작성)
						계	완료	조치중	
1	'26.7.30	건축	전화민원	1	바닥파손	1	1	0	-
2	'26.8.30	건축	안전신문고	1	난간파손	1	1	0	-
3	'26.9.1	소방	자체점검	4	소화기 기한경과 등	4	2	2	4월 완료예정
4	'26.9.12	소방	대행 (OO소방)	5	소방알림기 작동불량 등	5	4	1	9월 완료예정
5	'26.10.5	안전	국토부	4	...	4	4	0	-
6	'26.11.20	안전	부서명(市)	3	...	3	3	0	-
7	...	...	...	..	...	...	...	...	...

○ (점검유형) ① 신고(방문·전화민원,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② 자체(관리주체)

③ 기관(정부,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

④ 대행(소방, 전기, 승강기, 기계설비 등 유지관리업체)*

* 안전·보건 개별법령에 따른 법정 점검 시 지적/개선/보수보강 요청사항 기재
(예- 전기/소방/기계설비/승강기 정기점검(안전검사) 및 실내공기질 측정, 저수조
청소·수질검사 등)

※ 유해·위험요인 점검 실적은 본 관리대장에 작성된 건만 실적으로 인정

목 적

-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시설별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 추가 피해 방지, 신속한 사고 수습 및 동일 사고 재발 방지 도모
-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7호 다목(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절차 마련)

□ 추진 개요

- (목적)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 재해 대응체계 구축 및 재발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
- (내용) 위해 요인의 점검·개선절차, 재해발생 시 단계별 조치절차 마련 및 재난 대응반 구성 등

□ 주요 내용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			
① 신고 및 초기전파	② 현장 긴급조치 (긴급구호, 추가 피해방지 동시 추진)		
최초 발견자 119, 112신고, 재해상황 공유 관리팀, 市(사회재난과) 소방·경찰 등	구급구조, 병원 후송, 시민·직원 대피 관리팀 소방·경찰 등	작업중지, 출입·교통 통제 등 이용제한 관리팀 소방·경찰 등	현장확인, 보존 등 관리팀
③ 상황 보고	④ 상황대응	⑤ 구호 및 복구	⑥ 후속조치
상황 보고 (SNS 대응방 운영 등) 관리팀 등	대응기구 운영(필요 시) 관리팀 등	구호 및 복구조치 (피해자 및 가족 지원 등) 관리팀, 협업부서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관리팀, 협업부서

- ① (신고·전파) 사고 즉시 소방, 경찰 신고 및 보고 체계에 전파
- ② (긴급조치) 사상자 응급구조, 시설 이용통제 및 대피 조치 등
- ③ (상황보고) 관리부서 상황보고서(최초, 수시 및 최종) 작성 및 보고
- ④ (상황대응) 필요 시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응기구' 운영 등
- ⑤ (구호·복구) 피해자·유가족 연락체계 구축·지원, 복구지원 활용 및 지원요청
- ⑥ (후속조치)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목 적

- ❖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의 제3자 도급·용역·위탁 시 수탁자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수탁자의 안전관리능력을 담보하는 의무이행 평가 여부 등 체계적 관리
-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도급·용역·위탁 시 기준 및 절차마련)

□ 추진 개요

- (수립 주체) 도급·용역·위탁 담당자(발주자·계약담당자)
- (주요 내용) 제3자에게 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도급·용역·위탁 시 적격 수급인 선정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확보
 - 시의회 시설 직영중으로 추후, 운영 위탁 등 발생 시 기준 적용
- (실행 점검) 도급·용역·위탁 관련 절차이행 여부 점검*(연1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유지·이행 여부, 안전관리비용 적정 집행 여부 등

□ 주요 내용

< 수탁자 안전관리능력 선정 및 평가절차 단계별 추진사항 >

① 계획단계	- 과업지시서 내 ① 안전관리계획 제출 명시, 내역서 내 ② 도급·용역·위탁 등 비용 산정 시 안전관리비용 반영	담당자
② 공고단계	- 공고문 내 ① 안전·보건확보 의무, ② 안전관리계획서 ③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명시	계약 담당자
③ 심사단계	- 수탁 신청기관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평가	담당자· 계약 담당자
④ 계약단계	- 수탁자 ①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징구, ② 계약서 내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명기	계약 담당자
⑤ 이행단계	- 수탁자의 안전보건 의무이행 여부 확인·점검	담당자
⑥ 완료단계	- 수탁자 안전관리능력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환류	담당자

□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기관명		결재		
평가일시		담당자	관리팀장	의정담당관
사업명				
업체명				

구분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내용 및 기준	충족여부 (O,X)	점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50)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 (10)	-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 안전담당을 배정 시 배점		
	안전점검계획 (10)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절차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20)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비상조치 계획 (10)	-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비상상황 시 조치 계획을 수립 시 배점		
실행 수준 (20)	위험성 평가 (10)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시 배점		
	안전보건교육 (10)	-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시 배점		
재해 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3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배점한도 내에서 재해 건수 1건당 10점 감점 - 산재요양확인서 제출		
총 점				
등 급 판 단				

예시) 2년간 재해 건수 0건: 30점 / 1건: 20점 / 2건: 10점 / 3건 이상: 0점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
- B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 이상

☞ 평가 수준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통보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교육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교육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산업재해현황

- 참고: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확인서는 업체에서 발급하여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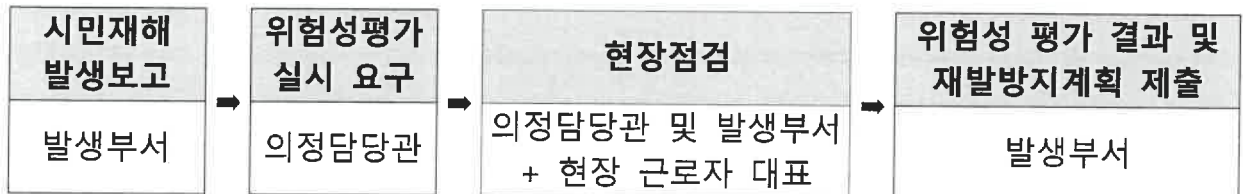
4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2항제2호

- 재해 발생 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시행으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후 작업을 개시

<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조치 절차 >



❖ 재해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이행 사항 동일하게 적용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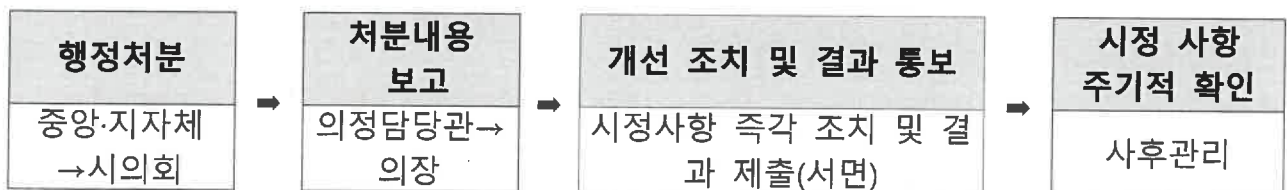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시정 사항 이행

법 제9조제2항제3호

- 중앙행정기관* 등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 추진

* 지방노동관서의 감독, 안전보건공단 등의 패트롤 점검 등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내용은 반드시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 조치 절차 >



❖ 행정처분 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이행 사항 동일하게 적용

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조치

법 제9조제2항제4호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 이행 여부 점검
- * 「소방시설법」,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등
- 주요 관계 법령 검토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 점검(연 1회 이상)
- * 4-1 '안전보건 관계 법령 체크리스트' 활용

○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대상

구분	점검종류	실시시기	점검내용	실시자격	미 실시 시 과태료
안전점검	정기점검 (1,2,3종)	○ A,B,C 등급 : 반기 1회 이상 ○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 외관조사 수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	초급 기술자	1개월 미만 지연 300만원
	정밀점검 (1,2종)	등급별 건축물 그 외 시설물	○ 측정·시험장비로 정밀한 점검	고급 기술자	1~3개월 지연 500만원
		A등급 4년 1회 이상 3년 1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연 1,000만원
		B,C등급 3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			
		D,E등급 2년 1회 이상 1년 1회 이상			
	긴급점검 (1,2,3종)	○ 공중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긴급점검이 필요시	○ 정밀점검 수준	고급 기술자	2,000만원
정밀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 (1종)	등급별 건축물(그 외 시설물 포함)	○ 각종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특급 기술자	6개월 미만 지연 1,000만원
		A등급 6년에 1회 이상			6~12개월 지연 1,500만원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12개월 이상 지연 2,000만원

○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유지보수 규정

구분	시설종류	안전점검·유지보수 규정	비고
공중 이용시설	건축물 (공통)	건축물 관리점검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 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 [별표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별표2의2]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별표3] 점검기록표	행정안전부령
공중 이용시설	건축물 (공통)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안전부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
		[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산업통상자원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별표7]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	환경부령

❖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중대산업재해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참고 1

'26년 추진 일정표(안)

사업명		추진일정				성과지표	소관 부서	비 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종합계획수립						의회 구성 시 (전반기·후반기)	의정담당관	
실행계획수립						의회 구성 시 (전반기·후반기)	의정담당관	종합계획 내 실행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정기					2회 / 년 이상	의정담당관 전 부서	
	수시					산업재해 등 대상 발생시		
유해·위험요인 점점 개선						수시	의정담당관 전 부서	
종사자 의견청취						수시	의정담당관	건의함 설치 (‘25.1월)
TBM 실시						작업 전	소관부서	작업일지 기재
안전보건교육	정 기					분기별(6h)	사회재난과 협조	
	관리감독자					연간(8h*)	의정담당관	* 무재해사업장
	수시·특별					발생시	소관부서	현업업무종사자
	신규채용					발생시	사회재난과 협조	현업업무종사자
	MSDS					유해물질 취급 전	소관부서	해당없음
	중대재해교육					연 2회 이상	사회재난과 협조	
수시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정기(3년)·수시	의정담당관	市 합동조사 실시 추진
비상조치훈련						연 2회	의정담당관	소방훈련 대체

참고 2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	주요 조치내용 등	담당자 연락처
의회	의정담당관 관리팀	- 산업재해 예방업무 - 산재사고 발생 보고 - 조치사항 협의 등 - 재난상황 유지/청사관리 - 청사 관련 재난 대응	(담당) 044-300-7231 (담당자) 044-300-7232
	사회재난과 중대산업재해 담당	산업재해 관련 자문 등	(담당) 044-300-4571 (담당자) 044-300-4571~4
시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상황 유지	044-300-5119
	회계과 청사관리담당	- 분청 청사관리 - 청사 관련 재난 대응	(담당) 044-300-6541 (담당자) 044-6542~6550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의료인력 지원 등	044-301-200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중대산재 발생 보고 - 산재조사표 제출 - 산업재해예방 질의	042-480-6300
유관 기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예방 질의	042-480-6307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본부	- 안전보건 세부수칙 질의 - 안전보건 각종정보제공	042-620-5600
	소방서	화재사고, 응급조치 등	(국번없이) 119 - (구조과) 044-300-6119 - (대응과) 044-300-3119
	세종경찰청 공공안전과	상황 협력	044-559-2483
	경찰서	현장 통제, 치안 유지	(국번없이) 112 (보람지구대) 044-320-8103 (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044-330-0352
	한국전력	전력 차단	(국번없이) 123 - (주간) 044-861-4275 - (야간) 044-861-4261
	중부도시가스	가스공급 차단	044-866-6547
	지역난방공사	난방공급 차단	1688-2488 - (열수송부) 044-861-5382
	32사단	작전과	042-829-6401

구분	기관	주요 조치내용 등	담당자 연락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세종경비단	• 044-862-2972
	한국토지주택공사	• 학교안전과	• 044-320-1713
	KT	• 세종특별본부 안전관리단	• 044-860-7918
	한국가스공사	• CM팀	• 044-861-7010
	한국가스안전공사	• 안전환경부	• 042-229-3585
	세종도시교통공사	• 검사2부	• 042-719-3034
	세종도시교통공사	• 안전감사실	• 044-850-0363
	세종 시설관리공단	• 안전보건팀	• 044-850-1152
	세종특별자치시 산림조합	• 기술지도과	• 044-865-2132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고객지원부	• 042-388-5640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 농어촌사업부	• 044-860-3353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 구호봉사팀	• 042-220-0124

참고 3

중대산업재해 관계 법령 상 의무조치 이행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구분	규정	내용	법령	의무대상 여부
중대 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중대법시행령 제4조제1호	○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장 -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업자	중대법시행령 제4조제2호	X
		○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및 이행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 위탁 가능	중대법시행령 제4조제3호	○
		○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 예산 편성 및 집행	중대법시행령 제4조제4호	○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업무 수행에 대한 권한 부여 및 이에 대한 평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관리감독자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중대법시행령 제4조제5호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사업보건의 등 배치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중대법시행령 제4조제6호	X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 반기 1회 이상 점검	중대법시행령 제4조제7호	○
		○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중대법시행령 제4조제8호	○
		○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 및 절차 마련 및 이행 - 과업지시서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 명시 등	중대법시행령 제4조제9호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1.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중대법시행령 제5조제2항 제1, 2호	○
		2.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실시 여부	중대법시행령 제5조제2항 제3, 4호	○

□ 산업안전보건법

항목	내용 / 역할	법령	의무대상 여부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u>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u>	산안법 제4조의 2 ※ 2021.11.19.시행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
관리감독자 지정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
안전관리자 선임/위탁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7조 시행령 제16~19조	X
보건관리자 선임/위탁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8조 시행령 제20~23조	X
산업보건의 선임/위촉/위탁	○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시 1명 선임, 위촉시 상시근로자 2,000명당 1명 위촉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22조 시행령 제29~31조	X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X
안전보건 관리규정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조직, 교육,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등	X
안전보건 교육실시	○ 전 사업장 (사무직 외 상하반기 각각 12시간 이상)	산안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
위험성평가 실시	○ 전 사업장(매년 실시)	산안법 제36조 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
안전보건 업무 전담조직 구성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전문인력 배치 3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2	X

참고 4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 대상 시설(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해당시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 제외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제외) ※ 아래 ① 참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 제외) ※ 아래 ② 참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 밖에 상기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공중교통수단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원료·제조물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원료·제조물 범위를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어 기본적으로 모든 원료·제조물을 대상으로 볼 수 있음

① 공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법” 적용대상 /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	시설규모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포함)	연면적 2,000㎡ 이상
3. 철도역사의 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5.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000㎡ 이상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500㎡ 이상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의 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000㎡ 이상
9. 「의료법」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 수 100개 이상
10.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 이상
1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연면적 430㎡ 이상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430㎡ 이상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외)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지하에 위치한 시설	연면적 1,000㎡ 이상
1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전시시설 중 옥내시설	연면적 2,000㎡ 이상
1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의 업무시설(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 제외)	연면적 3,000㎡ 이상
17.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 제외)	연면적 2,000㎡ 이상
18.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객석 수 1천석 이상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수 1천석 이상

② 공중이용시설(“시설물안전법” 적용대상 / 시행령 별표 3)

대상시설	대상기준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나. 계류시설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 포함)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대상시설	대상기준
5. 건축물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 2)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의 문화·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6. 하천	
가.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
다.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
8. 옹벽 및 절토사면(깎기 비탈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